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2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23216 취득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구합653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3.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취득세 465,928,300원, 지방교육세 46,592,83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6. 12. 1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취득세 279,365,770원, 지방교육세 27,936,570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취득세 203,736,980원, 지방교육세 20,373,690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취득세 465,928,300원 및 지방교육세 46,592,830원의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2016. 12. 1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취득세 279,365,770원 및 지방교육세 27,936,570원의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7행부터 4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 고쳐 쓰는 부분 각 항목의 순번 표시는 제1심판결의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

자. 원고는 2014. 12. 29. 위와 같은 건물 증축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29,195.4㎡ 중 이 사건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 면적 5,002.52㎡를 제외한 나머지 24,192.88㎡ 부분에 대한 취득세 465,928,300원 및 지방교육세 46,592,830원, 합계 512,521,13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위 환급세액은 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실제로 위 토지 24,192.88㎡에 대한 취득세는 541,557,090원, 지방교육세는 54,155,700원이다), 피고는 2015. 2. 23. 원고가 종전부터 공장으로 사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2

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제1차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차. 이에 원고가 2015. 5. 14. 감사원에 피고의 제1차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8. 2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카. 원고는 2016. 10. 17. 위 자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 면적 5,002.52㎡ 부분에 대한 취득세 279,365,770원 및 지방교육세 27,936,570원, 합계 307,302,34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위 환급세액은 원고가 자항 기재와 같이 이미 환급을 청구했던 [redacted]동 [redacted]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정착하지 않는 3,470.28㎡ 부분을 중복하여 환급세액 계산에 포함시킨 잘못된 결과이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정착 부분 토지 5,002.52㎡에 대한 취득세는 203,736,980원, 지방교육세는 20,373,690원이다), 피고는 2016. 12. 12. 제1차 거부처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제2차 거부처분'이라고 하고, 제1차 거부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2

나.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취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의 유치,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산업용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승계취득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경우,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될 예정인 경우 또는 그 건축물이 철거 중에 있어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 가, 나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을 들고 있고,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5. 4. 16. 선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2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지방세 면제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2조 본문),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하면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고(제1호),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제2호),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제5호).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에 관하여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건축'을 신축 또는 개축으로, '취득'을 원시취득 또는 최초 취득으로 축소해석하거나 위 규정의 적용 범위가 산업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될 예정이거나 이미 철거 중인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법조항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존에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물과 함께 승계취득한 후 아주 소규모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 전부를 감면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취득세의 감면은 새로운 소유자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 부동산을 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2

계취득하여 이를 본래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시설의 유치, 확충이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산업시설의 유치, 확충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순차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위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면서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지방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⑷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차 거부처분 전부(원고가 환급을 구한 부분에 대하여 바르게 계산한 취득세는 541,557,090원, 지방교육세 54,155,7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청구하였다)와 제2차 거부처분 중 원고가 환급을 구한 부분에 대하여 바르게 계산한 취득세 203,736,980원, 지방교육세 20,373,690원에 대한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취소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사경화

판사 김성식